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28호

2020.11.30.(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

[규 칙]

제4378호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일부개정규칙 2

◆ 공 고

제2020-3226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(예정지) 공고 4

자치법규**[규 칙]****◆ 서울특별시규칙 제4378호****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일부개정규칙**

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

2020년 11월 30일

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“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”를 각각 “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”로 한다.

별표 사무명란 제5호가목 중 “「철도안전법」 제81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반행위”를 “「철도안전법」 제82조제1항제14호,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, 같은 조 제4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위반행위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(종전의 나목) 중 “가목”을 “가목 및 나목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·확인

별표 수탁기관란 중 “서울메트로,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”를 “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”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1. 개정이유

지하철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수탁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,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
에 따른 위탁사무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' 20. 8. 12. 공포, ' 20. 10. 13. 시행)에
따른 과태료 부과 사무 위탁근거를 마련함(별표 사무명란 제5호나목 신설).

나. 서울교통공사 통합 및 지하철 운영기관 증설에 따라 수탁기관을 「도시철도법」 제2조제8
호에 따른 '도시철도운영자' 로 변경함(제1조, 제2조제1항 및 별표 수탁기관란).

다. 「철도안전법」의 개정(' 20. 4. 7. 공포, ' 20. 10. 8. 시행)에 따른 위탁사무 관련 조항을
현행화함(별표 사무명란 제5호가목).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-3226호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(예정지) 공고

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(예정지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1월 30일

서울특별시

1. 공고기간 : 2020. 11. 30. ~ 2020. 12. 29.
2. 지정사유 : 산사태/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하기 위해 지정
해제사유 : 구조물 대책을 통해 위험성이 완화되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
3. 의견 제출기간 : 2020. 12. 29.까지
4. 지정예정 연월일 : 2021. 1월중
5.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성명, 주소 : 【붙임1】 과 같음
6. 지정대상지 지형도면 : 【붙임2】 와 같음
7.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: 【붙임3】 과 같음
8. 의견제출 :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(예정지)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대하여 서울시 산지방재과로 이의 신청서 【붙임4】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9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산지방재과 (☎02-2133-2183),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(☎02-3783-5963),동부공원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(☎02-2181-1173),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(☎02-300-556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 1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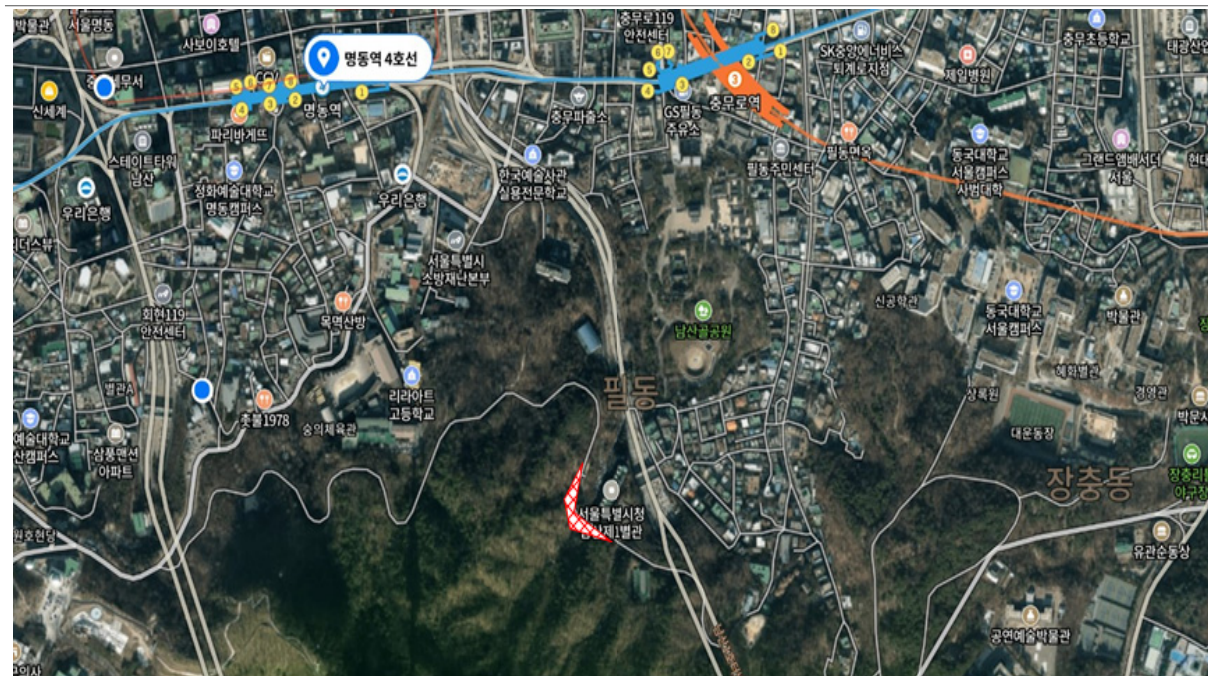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예정지 토지 조서

구 분	토지소재지		지목	지적(㎡)	지정면적(㎡)	소유자		비 고
	시·군, 읍·면, 동·리	지번				성 명	주 소	
계				1,172,171.5	33,300			
2020-1	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	산5-6 일대 (남산공원 북측순환로)	임야	439,171	300	국 (산림청)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	신규지정
2020-2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	산14-21 일대 (폐광원 뒤편 절개지)	임야	286,575	500	국 (산림청)	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	신규지정
2020-3	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	670 일대	공원	106,302.5	31,000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-60(성산동)	신규지정
2020-4	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	395 일대	공원	340,123	1,500	서울특별시	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	해제

【붙임 2】

번호: 2020년도 제 1 호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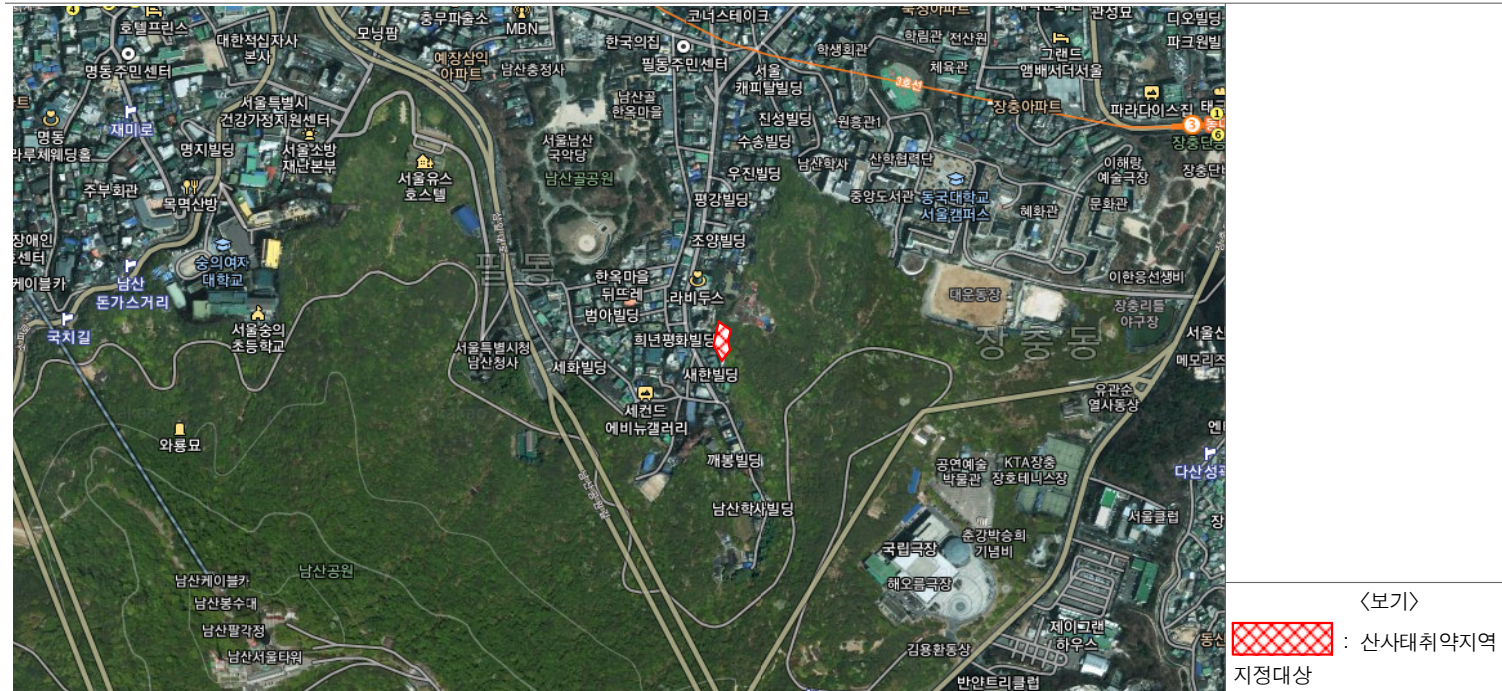
〈보기〉
 : 산사태취약지역
 지정대상

〈지정 내용〉

토지소재지				산사태취약지역 지정	
시·군, 읍·면, 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㎡)	지정 면적(㎡)	고시번호·일자
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	산5-6 일대 (남산공원 북측순환로)	임야	439,171	300	

번호: 2020년도 제 2 호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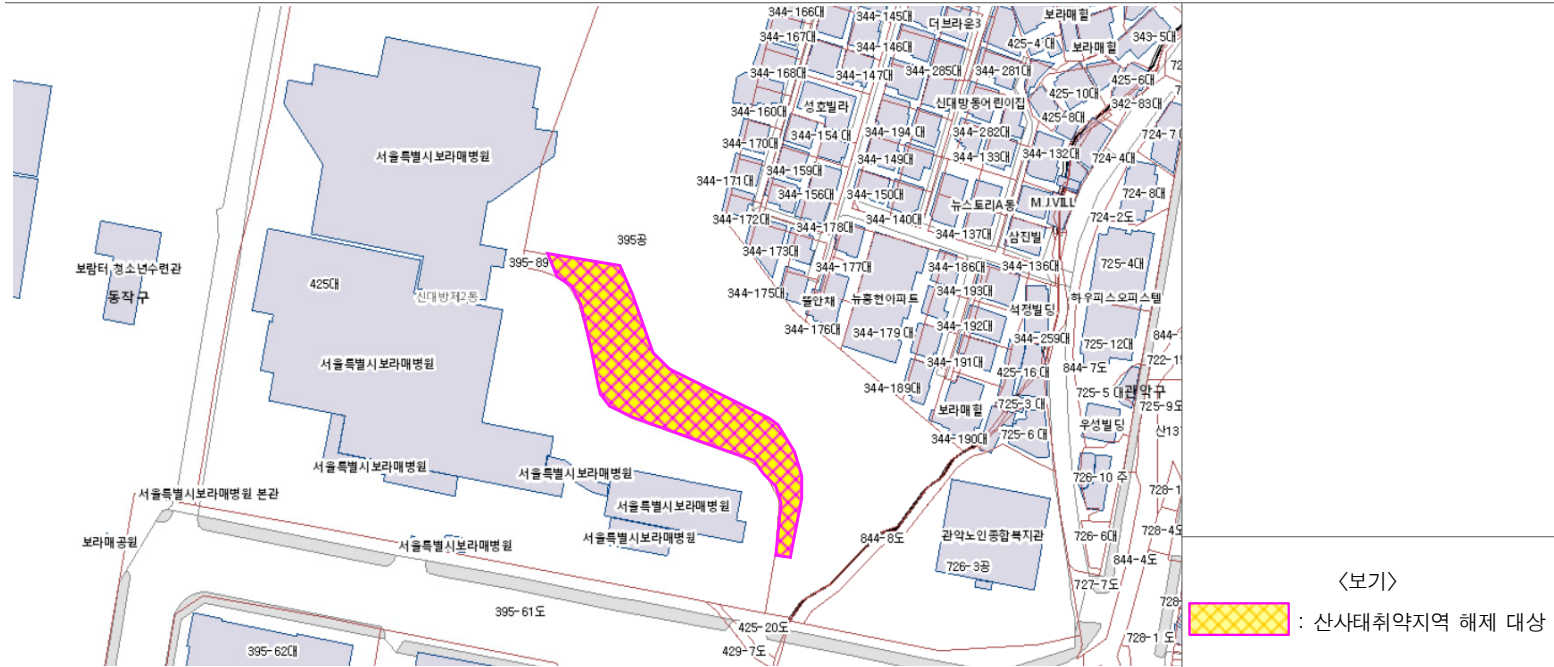


〈지정 내용〉

토지소재지				산사태취약지역 지정	
시·군, 읍·면, 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㎡)	지정 면적(㎡)	고시번호·일자
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	산14-21일대 (해광원 뒤편 절개지)	임야	286,575	500	

번호: 2020년도 제 4 호

산사태취약지역 해제 구역 도면



<해제 내용>

토지소재지				산사태취약지역 해제	
시·군, 읍·면, 동·리	지번	지목	면적(㎡)	해제 면적(㎡)	고시번호·일자
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	395	공원	340,123	1,500	

【붙임 3】

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「산림보호법」 발췌

제45조의10(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)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2.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「사방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

[본조신설 2012.2.22]

제45조의11(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)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「사방사업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,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·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·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·금지하거나 보수·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물 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행정대집행법」을 준용한다.

제54조의2(벌칙)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【붙임 4】

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의2서식] <개정 2015.12.31.>

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 20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	전자우편주소		
신청 이유			
지정 예정지	소재지		
	면적	㎡	
이의신청 면적		㎡	

「산림보호법」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현지 조사 확인	→	심 의	→	결정 통지
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---	---	-----	---	-------

신청인

처 리 기 관: 지역산사태예방기관
(지방자치단체, 지방산림청, 국유림관리소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